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5. 14.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4월 28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5년 5월 4일
- 다. 상정일자 : 제196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15년 5월 14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임인규

가.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5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 축소(안 제2조)

	현행	개정안
감면율	• 100분의 100	•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 2017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50

- 2) 상위법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삭제(안 제8조)
- 3)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조례 제894호 부칙 제3조)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동(同)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비율을 재산세 100%를 2014년~2016년까지는 재산세 75%로, 2017년~2018년까지는 재산세 50%로, 그 동안 적용해 왔던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인용조항을 제99조를 제184조로, 제96조를 제180조로 각각 변경하며,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부칙 제894호에 따르면 구세 감면 적용 시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조례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0”을 “감면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50”으로 변경하고,
 - 안 제8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는 삭제하였고,
 - 안 제11조 중 “1,000분”을 “1천분”으로 하였으며,
 - 안 제13조제1항 중 “제3조제1호의 단서”를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0분”을 “1천분”으로 한다.
 - 안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후단 중 “제99조”를 “제184조”로 한다.로 하고,
 - 안 제19조(중복감면의 배제) 후단 중 “제96조”를 “제180조”로 하였으며,
 - 부칙 조례 제894호(2010.12.20)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 제3조 중 “2015년”을 “2017년”으로 한다.로 하였음.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2015.3.19.~4.8.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으며, 2014년도 마포구 구세 감면 현황을 보면 총 90건/ 8,668만 4천원으로 이는 2014년도 마포구 구세 부과액 845억 4,557만 8천원의 0.103%에 해당하고, 2014년도 마포구 예산 4,322억 6,479만 8천원의 0.020%에 해당되며 또한 부칙에서 정한 구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감면 기간과 동일하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정하도록 한 동(同) 조례안은 적정한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되며, 그 밖에 정비되지 않은 부정확한 용어 및 문구 등을 한글맞춤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